

기독교한국침례회 원흥성광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원흥 성광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하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40(도내동 961)에 둔다.

제2조 (소속교단) ① 본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성광교회(이하 “성광교회”라 한다.)에서 분립한 교회로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속한다.

② 본 교회는 성광교회의 사명, 목적, 비전 등을 공유하며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는 유지하되 교회 운영은 독립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과 예배, 교육, 봉사, 구제, 복음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고 성도간의 친교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교리) 본 교회의 교리와 윤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 무오한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다. 본 교회는 1963년 남침례교회 총회에서 채택된 “침례교인의 신앙과 메시지”의 교리적 진술에 대해 찬성한다.

제5조 (정체) 본 교회 정치체제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리회가 최고의결기구인 회중정치이다.

제6조 (의식) 본 교회의 의식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성찬식)이다.

1.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에게 베푸는 의식이다.
2. 주의 만찬(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침례(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상하신 몸, 십자가를 기념하는 의식이다.

제 2 장 기 본 사 역

제7조 (예배) 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정규예배와 특별예배가 있다.

② 정규예배는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기도회와 성탄예배 등 절기예배이다.

③ 특별예배는 정규예배 이외의 예배이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선교) ① 본 교회는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미자립교회,

교단 산하기관, 봉사단체,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한다.

② 국내외 선교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 교회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교육) ① 본 교회는 교인의 영적 성장과 성경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학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한다.

② 본 교회 내 신앙교육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교 인

제10조 (교인의 구분) 본 교회 교인은 등록된 자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자로서 침례(세례)를 받은 20세 이상의 교인 중 본 교회에 등록된 후 3년이 지난 자로서 매년 주일 정규예배를 50% 이상 출석한 재적 신자이다.

2. 준회원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정회원이 아닌 교인이다.

3. 교회는 정기 및 임시 사무처리회 개회 전월 말일 기준으로 정회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직) 제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서리집사로 한다. 제직 선출을 위한 자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교인의 의무) ①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 기도회,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십일조 및 헌금으로 동참한다.

③ 교인은 본 교회 정관, 정관에서 위임한 각종 규정 및 규칙(이하 “규정 등”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교인의 권리 및 제한) 교인은 권리와 권리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인은 본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및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 교회의 정관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 교회 주일 정규예배에 출석하지 아니

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자동으로 상실된다.

4. 교인 자격의 복권 절차는 신규 등록자의 예에 따르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본 교회의 부흥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 제3조에서 규정한 본 교회의 목적을 저해하는 교인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단에서 정한 이단적 행위와 이단에 동조한 행위
2.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교회 부흥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
3. 본 교회 정관과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예배 및 교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 교회 각종 회의에서의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 손괴 행위
6. 교회와 목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언론, 인터넷, 통신사용 등 포함)

제16조 (징계의 종류와 절차) ① 징계의 종류는 권면과 출교가 있다.

② 징계는 중직자 5인 이상 또는 각 부서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권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출교는 중직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의를 징계의 절차에 의한다.

④ 징계를 받은 자가 회개하고 복권을 요청할 경우의 복권은 징계의 절차에 의한다.

제 4 장 교 직 자

제17조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배, 선교, 교육 등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본 교회를 대표한다.

제18조 (부교역자)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담임목사의 위임업무를 관장하는 부목사, 전도사 등의 교역자를 두고, 필요시 비상근 교역자를 둘 수 있다.

제19조 (직원 등) ① 직원은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역자 및 직원의 포상 및 징계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20조 (임면)** ① 부교역자와 직원의 임용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부교역자와 직원은 임용 후 매년 재계약 한다.
- ② 부교역자와 직원은 임용 후 매년 재계약 한다.
- ③ 교직자의 정년은 담임목사 65세, 부교역자와 직원은 60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그에 따른다.

제 5 장 조직 및 의결기관 등

- 제21조 (조직)** ① 본 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계획,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예배, 선교, 교육, 재정, 총무, 사회복지, 봉사 등의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부서 사역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계획에 따라 설치하되, 위원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직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2조 (의결기관) 의결기관으로는 사무처리회, 중직자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자문기관으로는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이 있다.

제23조 (사무처리회) ①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② 구성원은 제10조 제3호에 의한 본 교회 정회원으로 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의장은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부재 또는 위임 시 장로회장이 대행한다.
- ⑤ 사무처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교회 운영계획 및 예산 결산
2. 담임목사의 청빙 및 사면
3. 기독교한국침례회 원흥 성광교회 정관 개정
4.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 제직 및 각 위원장, 부서장 인준
5. 기본재산(부동산)의 구입 및 처분
6. 교회의 청산
7. 기타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 안건

⑥ 회의는 참석인원으로 성원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참석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본 교회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서면위임은 사무처리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사무처리회의 결정사항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⑦ 회의 개최는 1주일 전에 주요 의안과 함께 공고하고, 의결사항은 전 교인에게 공표한다.

제24조 (중직자회) ① 구성원은 담임목사, 시무·원로장로, 시무안수집사 및 시무권사(이하 “중직자”라 한다)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담임목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직자 1/3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부재 또는 위임 시 장로회장이 대행한다.

④ 중직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정관 제23조 제5항에 규정한 사무처리회에 상정할 의안 심의
2. 감사 및 각 위원회 위원 선출
3.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의 제·개정
4. 교인의 출교 징계

⑤ 회의는 참석인원으로 성원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3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4조 제4항 제3호는 중직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서면위임은 중직자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중직자회 결정사항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회의 개최는 1주일 전에 주요 의안과 함께 공고하고, 의결사항은 전 교인에게 공표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① 구성원은 담임목사, 제21조 제1항의 각 부서 담당교역자 및 각 부서의 장, 장로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으로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시무장로회에서 시무장로를 우선 선출하고, 시무장로가 부족할 경우 안수집사 중에서 선출하되, 시무장로회, 시무안수집사회에서 연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담임목사 또는 교역자를 제외한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장은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부재 또는 위임 시 장로회장이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정관 제24조 제4항에 규정한 중직자회에 상정할 의안 심의
 2. 기관별 활동 계획 심의 및 평가
 3. 재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 재정지출의 심의
 4. 교직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교인의 징계
 6. 각 기관 및 부서의 조직
 7. 감사 및 각 위원회 위원의 추천
 8.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주요 자산의 구입 및 처분
 9. 재정서류 열람 요청의 승인
 10. 교회 운영에 필요한 차입의 승인
 11. 규칙의 제·개정
 12.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 사항
- ⑥ 의결은 구성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재 산 관 리

제26조 (재산의 명의 및 관리 운영) ① 본 교회는 제3조에 따른 사명을 수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 대지의 명의는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으로 한다. 단, 소유권의 행사와 관리 운영은 본 교회가 한다.

② 교회 재산은 어느 교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7조 (재산의 구입과 처분) 본 교회의 재산 중 부동산의 구입과 처분은 운영위원회, 중직자회, 사무처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주요 자산의 구입 및 처분과 시설물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중직자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재 정

제28조(재정 운영의 원칙) 교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2. 지출은 수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차입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재정담당 부서장은 반기별 재정운영 결과를 반기 종료 후 다음 달에 운영위원회와 중직자회에 보고한다.

4. 재정담당 부서장은 본 교회 교인의 교회 재정서류 열람 요청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 열람할 수 있으며, 재정서류의 복사, 촬영 등 외부 반출은 금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수입) 교회의 수입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또는 수입이자,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31조 (지출) 교회의 지출은 제3조에 따른 사명을 수행할 목적에 따라 하며,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 등 사역별로 담임목사의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 있게 지출한다.

제32조 (예산) ① 재정담당 부서장은 제29조의 재정운영의 원칙에 기초하여 매년 11월까지 다음 년도 수입과 지출 예산안을 편성한다.

② 편성된 다음 년도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와 중직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2월 중에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3조 (결산) ① 재정담당 부서장은 수입과 지출의 결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중직자회에 보고하며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감사보고서와 함께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효율적인 결산업무 수행을 위해 재정담당 부서장은 반기별로 재정운영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중직자회에 보고한다.

제34조 (감사) ① 본 교회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2인 이하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재정위원 및 운영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중직자회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④ 감사는 본 교회의 수입 및 지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무처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본 교회의 모든 기관은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정운영의 위임) ① 재정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 지출 증빙서류, 관계 서류의 보관, 헌금의 관리, 사례비, 보수, 목회활동비, 퇴직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36조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본 교회 재정의 수입, 지출, 예산의 편성, 결산 등 교회재정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7조 (청산) ① 본 교회를 청산하고자 할 때는 중직자회 구성원 2/3의 찬성으로 청산절차 개시를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청산절차 개시 의결 후 7일 이내에 5인 이하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재정 및 재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여 사무처리회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④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은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에 귀속된다.

제38조 (정관의 개정) 본 교회의 정관의 개정은 사무처리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9조 (규정 등의 제·개정) ① 본 교회 정관에 미비된 사항과 정관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정관 아래에 규정과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규정과 규칙은 담당 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제·개정하여 규정은 중직자회,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40조 (경력인정 관련 경과조치) (경력인정 관련 경과조치) 성광교회에 등록된 성도 중에서 본 교회로 옮겨 등록하는 성도는 성광교회에서의 직분, 교육 실적, 봉사활동, 등록 기간 등 경력 일체를 그대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 (발효) 본 규약은 2021년 6월 6일 제정하고, 공포 즉시 시행한다.